

1960년대 전반기 한국 유선방송사업의 운영과 전국유선방송협회 활동의 의의*

윤상길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1960년대 전반기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사업의 운영과 변모과정을 1963년 12월에 출범한 전국유선방송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유선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재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그리고 국가와 관계 속에서 시장 내 행위자로서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진 자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1960년대 전반기 유선라디오 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 그리고 유선방송업자들의 협동체적 조직으로 출범했던 전국유선방송협회의 초기 사업구상 등을 살펴보았다.

KEYWORDS 유선방송, 앰프, 스피커, 전국유선방송협회

* 본 논문은 2016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cyrus92@naver.com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1954년 12월 민간방송국인 기독교방송(CBS)이 개국하고 이어서 1956년 인천복음방송(HLKX, 극동방송의 전신)과 HLKZ-TV,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상업방송국으로서 부산문화방송이 1959년에 개국함으로써 1950년대 말 한국의 방송은 국영방송 KBS와 다수의 민영방송이 공존하였던 국민영(國民營) 이원방송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초창기 한국의 유선방송은 1950년대의 국민영 이원방송체제 속에서 시작되어, 5·16 군사쿠데타 이후 다수의 상업방송들(1963년의 동아방송, 1964년의 라디오서울, 그리고 그 밖의 지역네트워크방송국 등)이 점차 설립됨으로써 한국의 방송체제가 상업방송체제로 변모되어 가던 시기인 196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방송형태였다.¹⁾

농촌을 중심으로 한 초창기 유선방송의 발전은, 1950년대 말의 시대적 상황, 첫째로 무선방송의 전계강도(電界強度)가 약하여 청취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보조적인 시설로서 그 효율성이 인정되었다는 방송기술적인 상황, 둘째로 전기시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아 청취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았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셋째로 냉전적 세계질서 속에서 공산권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가방송 이외에 다른 나라의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첩(防諜, counter-intelligence) 수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최준, 1965, 30쪽; 정대철, 1992), 국가의 정책적 선택에 의한 다분히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승만 정부 시절 공보부 실장이었던 오재경(吳在璟)의 발상으로 1957년 11월 유선라디오 마을사업(‘앰프촌’ 사업)으로 시작된 유선방송이 라디오 전파의 직접 수신이 아니라, ‘앰프촌’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국영라디오방송국의 전파 → 시골 마을 단위로 설치된 전파증폭기(amplifier, 앰프) → 가정집의 스피커’식의 중계 내지는 재송신 방식을 채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약 800여 개의 민간유선방송업체(소위 ‘민영 앰프촌과 무허가의 민간유선방송사업자’)가 성황을 이루었던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전반적인 ‘사회정화’ 정책의 흐름 속에서도 군정(軍政)이 ‘유선방송 철폐’라는 당초 입장에서 보호육성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선회를 하였던 것이 기존의 마을 단위 유선방송이 가진 공보적(公報的) 활용가능성을 전유하고자 하였던 결과라

1) 1950년대 말에 등장했던, 라디오와 앰프, 스피커, 그리고 유선선로를 기술적 구성요소로 한 유선방송은 1970, 1980년대의 중계유선방송(RO), 그리고 현재의 음악유선방송과 케이블TV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방송법상으로 ‘방송’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앰프방송은 민방위 훈련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 일종의 ‘줍비’ 미디어다.

는 사실도 또 하나의 해석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윤상길, 2011a). 그뿐만 아니라, 1960년대 초반기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보급대수와 앰프/스피커 보급대수 간의 비교를 근거로 주장되었던 ‘도시=트랜지스터 라디오’, ‘농촌=스피커’의 도농 간 분화현상과 ‘라디오테크놀로지의 부락화’현상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초창기 유선방송의 발전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윤상길, 2011b).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의 주장들과 해석적 근거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1960년대의 유선방송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도시를 중심으로도 전개되었다는 점과, 또 1960, 197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유선방송이 기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 보급되었던 앰프와 스피커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1964년 10월 말 당시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100개의 앰프와 28,970개의 스피커가 존재하고 있었다(한국방송사업협회, 1965, 661쪽). 1960년대 도시지역 유선방송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은 소위 ‘사설유선음악방송’이었다. 유선음악방송은 1964년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질과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송이었으며, 심지어 1980년대의 유선음악방송은 다채널을 갖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김재문, 1982, 90~91쪽).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값싼 트랜지스터 방식에 의한 라디오 수신기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 1960년대 말 농촌지역에 공급된 라디오가 240만대에 육박하게 되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유선앰프방송은 완전히 쇠퇴되기에 이르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이 활발해 집에 따라 당초의 유선식 앰프와는 다른 스피커에 의한 앰프방송이 리동(里洞) 단위로 설치되어 활용되기에 이르렀다(농촌진흥청, *n.d.*, 15~16쪽).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중의 하나는 유선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재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 이와 연관된 문제로서, 기존 연구는 지나치게 국가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국가와 관계 속에서 시장 내 행위자로서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진 자율성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1960년대 전반기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사업의 운영과 변모과정을 1963년 12월에 출범한 전국유선방송협회(이하 전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으로부터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1960년대 전반기 유선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 및 방송편성은 어떠했는가?

연구문제 2. 전국유선방송협회의 출범과 활동이 가진 의미와 의의는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전유협이 출범과 활동에 있는 만큼, 본고에서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사료는 전유협이 발행하였던 잡지인 〈유선방송소식〉이다. 당시 신문들과 〈주간방송〉 등과 같은 방송전문잡지들이 거의 대부분 무선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유선라디오 방송과 관련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데 반해, 〈유선방송소식〉은 1960년대 중반 유선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로서 기존 통사는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사료이다.²⁾ 이런 측면에서 1960년대 유선방송사업의 운영과 전국유선방송협회의 활동에 대한 본고의 작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공보매체로 전환되어 발전되어갔던 이전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제시해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1960년대 전반기 유선라디오 방송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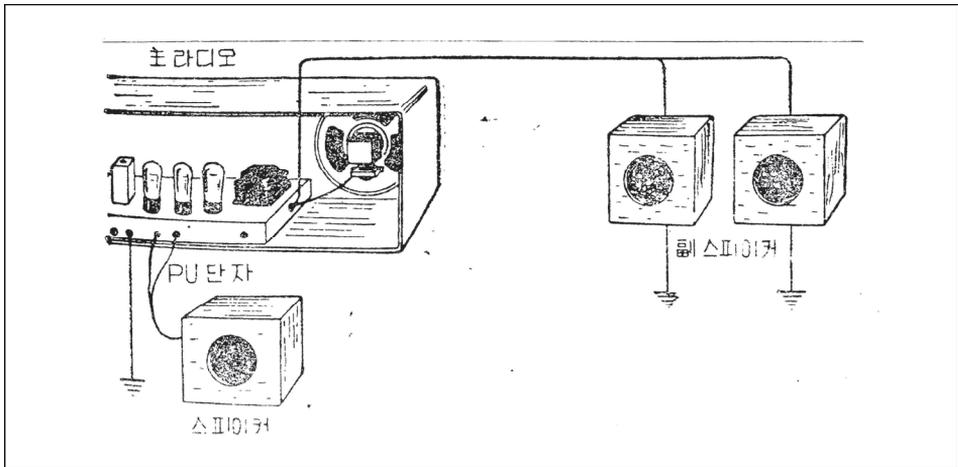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유선방송이 존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기술적 시스템의 구성 및 설치뿐만 아니라, 수지 타산에 입각한 재정적 운영, 그리고 그러한 재정적 수입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틀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1960년대 전반기 유선방송사업의 운영상황을 기술적·재정적·편성적 차원에서 나누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적 운영

유선라디오 방송국마다 다소간 차이는 존재하였겠지만, 기술적으로 유선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비하여야 했다. 첫째는 무선라디오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 및 믹서기, 둘째는 수신된 방송전파를 유선으로 중계하기 위한 수신용 앰프장치(즉, 증폭기), 셋째는 수신된 방송신호를 각 가입자 스피커로 전달하는 송수신 전선 선로다. 물론 수신용 앰프장치를 설비하지 않고서도 유선라디오 방송을 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였다. 1961년 〈전파과학〉 3월호에 소개되어 있는 경상남도 어느 한 지역에서 처음 유선라디오가 실험적으로 운영되었던 사례에서는 별도의 앰프장치와 믹서기를 구비하지 않고 무선라디오 장치의 픽업단자에 보조 스피커를 장치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였다(편집부, 1961, 6쪽).

2) 현재 이 사료는 목동 방송사료관에 총 다섯 권(1964년 7월 창간호, 1965년 8월호, 1965년 9월호, 1965년 10·11월 합병호, 1965년 12월호)이 소장되어 있고, 필자가 1966년 1·2월 합병호를 소장하고 있다.

그림 1. 앰프장치를 설비하지 않은 유선라디오방송 기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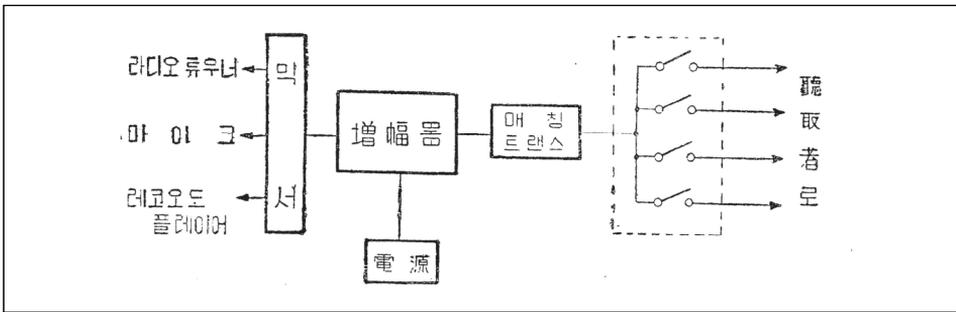
* 출처: 편집부, 1961, 7쪽

그러나 방송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위의 요소 이외에도 다음의 세 가지 기술적 요소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비하여 운영하여야만 했다. 우선 무선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공지사항의 전달을 위해선 라디오튜너와 레코드 플레이어(때에 따라선 테이프 플레이어), 마이크 등이 구비된 믹서기(일명 프리앰프)와 앰프, 그리고 이 방송신호를 각 송신선로로 개폐시켜주는 전환기(일명 매칭트랜스)를 구비하여야 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요소인 앰프의 경우, 전기사정이 좋지 않으면 별도의 축전지를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앰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었고, 전기사정이 좋으면 진공관식 앰프를 사용하였다는데, 1960년대 초반 당시에는 도시지역에서도 전기 사정이 안 좋아 트랜지스터 앰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정민, 1961, 69쪽).³⁾

이와 같이 1961년 8월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하,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3)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기술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서울의 전농동에 있는 전농(典農)소 리사는 유선방송을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용한 앰프는 트랜지스터 앰프를 사용하였으며, 출력은 10W×6. 도시에서 트랜지스터 앰프를 사용한 자체가 우습기는 하지만 전기사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발전기를 구입하여 진공관 증폭기로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앰프는 RCA의 2N307 PP 10W의 메인 앰프 6조를 한 샷시에 꾸며 넣었으며 각각 출력 트랜스의 2차 측은 100~600Ω으로 되어 있다. 사용하는 전원(電源)은 축전지(12V)이며 평균 3~4일에 한 번씩 바꾸어 쓰고 있다”(정민, 1961, 68쪽).

그림 2.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계통도



* 출처: 정민, 1961, 69쪽

별도의 특별한 시설규정 없이 방송업자가 자율적으로 유선라디오 방송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공보부와와의 논란(윤상길, 2011a) 끝에 관리법의 제정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게 된 체신부는 기존 통신망에 대한 장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 「유선방송시설기준령」(1961. 11. 14 공포)을 마련하여 관리하였다. 총 6조로 구성된 「유선방송시설기준령」 중에서 수신시설의 설치와 기술기준을 규정한 조문은 4조와 5조다. 이 「유선방송시설기준령」은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소유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2, 360~361쪽).

제4조 (수신시설의 설치)

- 1) 수신시설은 유선전기통신 시설물로부터 최저 1미터 이상을 격리하여 전기적 혼촉(混觸)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隔離)에 설치하여 한다.
- 2) 수신시설을 전력계 시설물과 교우(交叉) 또는 접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사설전신전화 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신시설의 기술기준)

수신시설의 설치와 시설검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수신기 장치
 - ① 접지(接地): 수신기의 샷시 및 철가(鐵架) 등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보안장치: (후즈)피뢰기, 기타 필요한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적 혼촉 방지: 건물 내에 있어서의 수신기 시설은 전력계 시설 또는 유선전기통신 시설과 완전히 격리하여야 한다.

2) 수신용 앰프 장치

앰프 장치의 출력부분은 평형형(平衡型)이어야 한다.

3) 송수신 선조(線條)

① 시설방식: 대지귀선식(大地歸線式)(즉, 단선식(單線式))이어야 한다.

② 선조(線條): 직경 0.65밀리미터 이상의 연강선(軟鋼線)을 PVC 또는 고무 피복으로서 절연(絶緣)한 옥외용 선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절연 저항: 노선상호간 선로 및 지면 간은 우천 시에도 킬로미터 당 50DBM 이상의 누화(混話)를 유기(誘起)시켜서는 아니 된다.

위의 시설기준령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당국에서 무분별하게 유선방송사업이 기술적으로 운영될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것은 통신장애였기에,⁴⁾ 유선라디오 방송업자가 방송국 설비를 준비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했던 사항은 기존 전력계 시설 또는 유선전기통신시설과의 장애였다. 이는 전유협이 협회지였던 <유선방송소식> 1964년 창간호(7월호)에 실린 경기도지부장의 기술지도 안내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비해야 할 장치가 보안기와 배선판 확정기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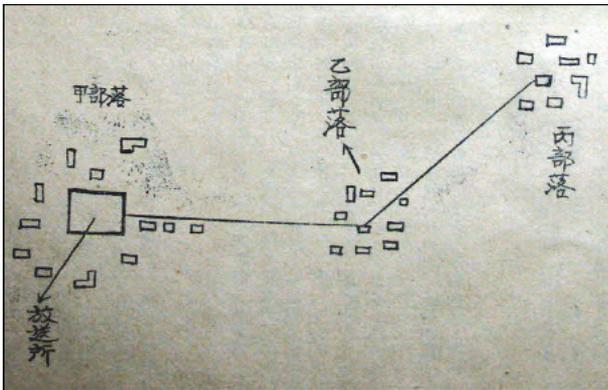
이상적인 설비란 규모가 다양하겠지만 우리 업자로서는 시설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도는 낙뢰를 방지하는 보안기와 전선의 시설 배전시설 고장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배선판 확정기** 등을 하는 순위로 기술하려 한다. (백봉하, 1964, 23쪽)

특히, 시설기준령의 규정에 따르자면 각 수신가입자는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기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 글에서는 각 가입자가 이를 따르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유선라디오 방송업자가 <그림 3>에서의 부락 갑(甲)과 을(乙), 병(丙) 간의 연결선 사이에 보안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정도로서(백봉하, 1964, 24쪽), 시설기준령이 시행된 지 3년가량 흐른 시기까지도 정부의 엄격한 시설기준은 유선라디오 방송업자의 유선방송 가입자 확보에 큰 장애물이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볼 때, 1964년 당시 유선라디오 방송의 기술적 운영은 완전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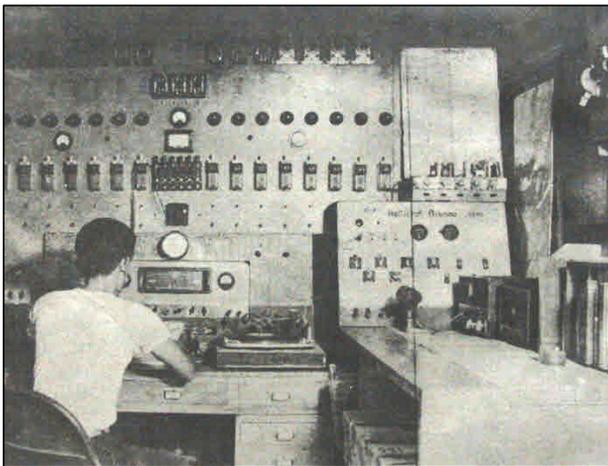
4) 유선방송이 가져올 수 있는 '통신장애'에 대한 관리법 제정 당시 체신부의 우려 입장에 대해선, 윤상길(2011a, 1980, 181쪽)의 연구를 참고 바람.

그림 3. 라디오 유선방송의 개념도



* 출처: 백봉하, 1964, 46쪽

그림 4. 유선앰프를 조종하는 실황



* 출처: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표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음의 전유협 사무국장의 언급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W190선(線)의 군용선 폐선(廢線)으로 활용되는 방송선(放送線)이 거의 노후화하여 합선 누전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보안기(保安機)를 부착하지 못하여 누전 낙뢰되는 사례와 전기전화선 등의 전주(電柱)에 병설한 관계로 누전, 누화(漏話)의 장애가 허다한 사정이며, 특히 테이프, 레코드, 전축, 배터리, 마이크, 앰프 등은 미흡미비”(강대직, 1964, 13쪽)한 상황이었다.

2) 재정적 운영

소유와 경영형태를 기준할 때, 1960년대 유선라디오 방송은 크게 관영 유선라디오방송과 민영 유선라디오방송으로 나뉜다. 경영주체에 따라 분류할 경우엔 보다 상세하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즉, “정부보급의 관영이 있고, 또 도(道)라든가 시군(市郡)에서 돈을 내어 시설한 공영앰프, 그 외에 민간유선방송업자가 있고, 거기다가 농협, 수협, 4H구락부 등이 주관”(방송좌담회: 무허가유선방송업자 일제단속을 주제로, 〈유선방송소식〉, 1965년 8월 호, 7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영유선라디오 방송사업체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는 보통 한 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스피커 보유가 600대 이상이 되어야만 기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도 1970년 무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8쪽), 1960년대 전반기 유선방송 사업자의 재정적 운영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민영유선라디오 방송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요되는 시설료

유선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 방송설비를 구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설료가 소요되었다. 이때 요구되는 시설료의 규모는 주로 자재의 수급, 혹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정 등의 문제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지역의 전기사정이 주요한 관건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전기사정이 좋지 않으면 별도의 축전지를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앰프를, 그리고 전기사정이 좋으면 진공관식 앰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유선라디오 방송국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1961년과 1960년대 중반의 잡지기사에 실린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근거로 추산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1961년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트랜지스터 앰프의 경우엔 최소 7만 환에서 최대 40만 환까지 소요되었다.⁵⁾ 자작(自作)과 기성(既成)의 여부, 그리고 앰프출력에 따라 가격차이가 존재하였다. 또 전원인 축전지는 1만 6000환에서 4만 환까지 소요되었다.

이 앰프는 자작(自作) 또는 기성(既成)제품으로 나뉘는데, 자작하려면 100W 정도면 약 10~13만 환이면 충분하고 기제품이면 제품에 따라 40만 환까지도 호평(呼評)되고 있다. 전

5) 현재의 시세로 보자면, 약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환권의 시세에 대해선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cafe.naver.com/antimaker/165696>

기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트랜지스터 앰프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자작(自作)하는 것이 기제품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주로 기제품의 시세를 살펴보면,

15W 7~15만 환 20W 9~17만 환
 25W 10~21만 환 30W 12~25만 환
 50W 12~27만 환 100W 28~35만 환

전원인 축전지는 12V의 2HN이 외국제가 4만 환, 국산이 2만 환, 6T(12V)가 외국제 3만 환, 국산 1만 6천 환이다. (정민, 1961, 69쪽)

그 밖에도 수신설비 및 배선용 전선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특히 이 시설들은 수요에 따라 시세변동이 심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마이크, 테이프 레코더, 라디오 튜너, 매칭 트랜스 등은 그 시세가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마그네틱 스피커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로서 갑자기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입량이 그에 응하지 못하여 구입하기 대단히 힘이 든다. 1개당 1,800~2,200환까지 한다. 배선용인 W190선은 주로 군(軍)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역시 가격의 변동이 심하며 평균 500m당 6,000환 정도이다. 기타 분할배전판, 충전기 등의 부가장치에 필요한 비용도 무시 못 할 정도이므로 시설을 꺾으려면 완전한 계획이 선 다음에 그의 비용을 산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민, 1961, 69쪽)

한편, 다음의 자료는 1965년 전유협이 정부에 청구료 인상을 청원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에 전제한 것인데, 이 자료에는 1965년 당시의 평균 시설비를 2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운영규모에 따라 1961년 당시 소요되는 시설비의 규모도 달라졌겠지만, 이 자료의 1961년과 1965년 물가지수 비교⁶⁾를 근거로 1961년 당시의 시설비를 추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자료에서는 1965년 당시 전유협이 최소한의 합리적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운영비를 추산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자료에 의하면, “1961년 5월 도매물가지수(전국) 116.3에 대하여 1965년 7월 현재 225.4이므로 증가 93.8%이며, 196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서울) 111.4에 대하여 1965년 7월 현재 210.6이므로 증가 89.0%”(유선방송 청구료 인상 건의 공개,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7쪽)였다.

① 시설비 금리

시설비 200,000원 × 월 이자 0.04 = 8,000원

② 기재(機材)원가 감가(減價)월액(기재 수명 8년 한(限))

200,000 ÷ 8년 ÷ 12월 = 2,100원

③ 기재 보수비 월액 1,500원

가. 진공관 800원

나. 부분품 700원

④ 전기료 또는 충전료

전기료 월액 800원

충전료 월10회 1,200원

평균 1,000원

⑤ 교통비: 월액 700원

⑥ 선로 보수비: 월 1,200원

⑦ 인건비: 월 6,000원

⑧ 운영잡비: 월 1,500원

회계(會計) 월액 22,000원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종합해볼 때, 1960년대 전반기 유선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밖에도 방송국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매월 2만여 원의 유지·보수 비용 등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년 동안 운영비용은 대체로 35만 원에서 45만 원가량, 지금의 시세로 치자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2) 청취료 수입

유선방송사업자의 재정적 운영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청취료 수입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었다. 우선 ‘관리법’ 제정 이전 민영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경우엔, 자체적으로 청취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1절에서 언급하였던 서울

7) 1965년 당시 신문 1개월 구독료가 130원이었고(유선방송사업자 허가증갱신, 〈유선방송소식〉 1965년 8월호, 9쪽), 그리고 현재 신문구독료가 15,000원인 현재와의 대조를 통해 산술적으로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당시 1원은 대체로 오늘날의 115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농동의 전농소리사의 경우엔 “처음 가설 당시 3,000환을 징수하고 청취료는 매달 600환”(정민, 1961, 68쪽) 정도를 부과하였는데, 1961년 당시 신문지 구독료가 월 400환이었던 당시, 서울특별시 및 중소도시의 스피커 대당 청취료는 평균 700환이었다(유선방송 청취료 인상 건의 공개,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7쪽). 그러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징수하던 청취료가 관리법 제정 이후 법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관리법 제6조⁸⁾의 규정에 따라, 청취료는 대략 매달 40~50원 사이에서 허가·징수되었다(박성휘, 1964, 29쪽). 이때 농촌은 40원, 도시는 50원으로 차등 적용되었다(유선방송사업자 허가증갱신, <유선방송소식> 1965년 8월호, 9쪽; 안미암, 1963, 49쪽). 한편, 공보부의 재원으로 운영되었던 관영 유선라디오 방송국(일명 ‘관영 앰프촌’)의 경우에는 청취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다만 월 30원 이내의 유지비를 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월 30원 이내의 유지비 징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왜냐하면 관영앰프의 설치지역이 원래 영세한 농촌 지역이었던 점뿐만 아니라 청취료 징수에 대한 청취자들의 저항 때문이었다.⁹⁾

이와 같이 ‘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됨에 따라,¹⁰⁾ 청취료와 관련된 유선방송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주된 내용은 높은 물가변동에 비해 낮게 책정된 법정 청취료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정청취료의 인상문제였다. “그 수입원인 청취료가 대당 40~50원으로 법적 제약(청취료가 없는 라디오에 비하여 본 시설의 스피커만이 유료인 관계로 사실상 증액하기 어려운 점)을 받고 있는 까닭에 보수·확장을 할 만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고, 관영의 경우도 국비로서 시설만을 했으나 그 후 보수, 유지, 관리가 조루(粗濶)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박성휘, 1964, 29쪽)된다는 지적과 함께, 청취료가 물가변동을 따라가지 못해 “쌀값이 2,000원 가던 5년 전이나 5,000원대 가는 오늘날이나 변함없어 자체재정은 보수와 유지비를 허락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호구(糊口)마저 어려워지게 되었다”(임석운, 1964, 92쪽)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8)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청취자로부터 청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관영 앰프시설 전부가 관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일부는 민간자신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은 유지비 징수에 대하여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시설해주었고 또 우리 돈도 들어가 있는데 운영자가 유지비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하는 것이 청취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설혹 청취자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되도록이면 유지비를 내려고 생각한다면 치더라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관영앰프가 설치된 지역은 원래 가장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지비 징수에 의한 관영앰프의 운영유지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다.”(기획실, 1965a, 22쪽)

10) 법 제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일부 민간 유선라디오 방송국은 법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몇몇 민간 유선라디오 방송국은 “100원 내지 200원씩 자의로 받았었고, 그뿐만 아니라 선전 광고 등으로 수입을 올리기까지도 했다”(안미암, 1963, 50쪽).

물론 청취료 인상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유선라디오 방송사업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업계 일각의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허준, 1965, 5쪽).¹¹⁾ 그러나 이러한 일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취료 인상은 유선방송협회의 공식적인 건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65년 전유협은 청취료의 징수 한계를 1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보부에 공식적으로 청원하였다. 다음은 1965년 8월 17일 협회 이사장 명의로 공보부 장관에게 보내진 건의서의 내용 중의 일부 대목이다.

본회창립 초기부터 간단(間斷)없이 요청하고 있는 유선방송수신사업자의 청취료인상 건의에 대하여 그간 수차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부의 유선방송육성강화책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 실정에 따른 적정요금인상을 실시기로 되었으므로, 별지사항건의(別紙事項詮議)하시와 조속한 실현이 있으시기 삼가 건의하나이다.

(別紙)

1. 청취료 인상 요청액: 100원(스피커 개당)

2. 인상요청의 이유

전면적으로 운영비 조정이 불가능하여 도산지경에 있는 것임. 단 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합리적 운영의 경지(境地)에는 도달할 가망이 전무하겠지만 업자의 공통된 요망에 부응하는 것과 소부분이나마 사업자의 의욕을 고무시키는 데 있어 일조가 되는 것임.

3. 운영현황(1개소당 250명 = 추산근거 스피커 100만 ÷ 4,000업소)

月청취료 40원 × 250(스피커) = 10,000원(100%징수의 경우)

4. 운영비 推算(최소한도의 합리적 운영을 요하는 월간지출내역)

5. ... (중략) ... 회계 월액 22,000원

... (중략) ...

7. 결론(인상에 대한 방안)

스피커 대당 한도액 100원으로 정하여 지방장관은 그 지방 실정에 의하여 한도 내에서 당해(當該) 유선방송협회의 의견을 징(徵)하여 적정요금을 공시할 것.

11) “한 달에 40원 받던 청취료를 100원으로 올려 받는 데서 사업체가 채산이 맞고 공보부가 과거에 아니하던 보조금을 작년에 3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업자가 나아지고 금년에는 400만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더 나아지게 되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40원의 청취료를 100원으로 인상시킨다해도 청취자는 농어민이며 영세시민층인데 청취료가 인상되면 스피커는 떨어져 나갈 뿐, 40원 그대로 받던 때보다 역효과가 발생할 지역도 있겠고 보조금 400원이라 해도 4,000 업소에 직수(直輸)한다면 1업소당 1,000원 풀밖에 더 되겠는가?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의 운영방법으로서는 유선방송은 육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허준, 1965, 5쪽).

본건(本件)요금의 변경은 100원 한도 내에서 지방장관의 재량에 맡길 것. (유선방송 청취료 인상 건의 공개, 〈유선방송소식〉 1964년 9월호, 7쪽)

제출된 건의문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제대로 된 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22,000원인데 반해, 업체의 평균적인 수익은 약 10,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선 현재의 40원 내지 50원의 청취료를 약 2배 수준인 100원 한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¹²⁾

그러나 법정 청취료와 상관없이, 실제 청취료 징수율은 매우 저조하고 지역마다 차이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울시 변두리의 한 업자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월말 수금은 50%밖에 안 되고 잘될 때에도 70%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안미암, 1963, 50쪽). 이와 같은 저조한 징수상황은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은 1971년 어느 한 농촌지역의 징수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농촌지역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곡물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점이다.

1971년 당시 최고는 충북 도원군 도원면의 1,800대인데, 여기는 도원면을 중심으로 부근 5개 면을 맡고 있다. 가장 작은 규모가 스피커 300대 정도로서 명맥만 유지하는 곳이 숲업체의 27%나 차지한다. 충북 청원군 남성면의 경우는 300개의 스피커로 최장거리 40리까지 뻗고 있다. 청취료 징수율은 저조하여 65%정도인데, 매월 현금으로 내는 집은 극소수, 대부분이 추수시에 일년치로 쌀 1말, 보리 1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과 달리 청취료를 지불 못하는 집에 대해서도 별반 성가시게 할 수도 없으므로 말하자면 철저한 자진납부만이 이뤄지는 셈이다(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9쪽).

종합해볼 때, 당시 대다수 관영앰프(관영 유선라디오)뿐만 아니라 상당수 민영유선라디오 방송국의 재정적 기반 자체는 너무 낮게 책정된 법정 청취료와 저조한 청취료 징수율 등으로 인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12) 이러한 전유협이 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받아들여졌는지는 불명확하지만, 1966년 1월 27일 공보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각도 지부장 회의의 회의록(〈유선방송소식〉 1966년 1·2월 합병호)에 실린 공보부측 답변, “청취료 인상에 대하여는 협회 본부로부터 벌써 수차 건의가 있었으며 현재 각도(各道)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책정 중에 있고, 다소 시일이 늦어진 것은 청취료 인상을 유선방송확장에 대한 제반문제와 일괄 처리하려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인 바, 곧 확정 시켜 시달하겠음”이라는 대목이 있고, 또 1970년대 초의 자료에서 “매달 40원에서 80원에 이르는 청취료를 지불”(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8쪽)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1966년도 중반 무렵에 80원 한도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프로그램 편성

‘관리법’ 제정 이전 시기,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은 전적으로 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유선라디오 방송국에게는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제작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무선라디오 방송의 중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연구실이 1961년 6월 18일자 〈주간방송〉에 발표한 조사결과인 “전국 ‘앰프’ 이용실태: 앰프관리인을 대상으로”라는 신문기사에 의하면, 당시 유선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방송 중에서 농어촌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청취한 방송은 국영방송인 KA1과 1959년에 신설된 선전방송인 KA2였다(윤상길, 2011a, 183쪽).

그러나 당시의 편성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관리법 제정 이전인 1961년의 한 잡지 기사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대략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정민(1961, 69쪽)은 경기도 지방에서 유선라디오 방송이 가장 활발하였던 의정부 지역¹³⁾의 두 유선라디오 방송국을 탐방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1,000여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도림백화점 라디오부(部)와 양주문화사(楊洲文化社)에 대한 그의 소개에 의하면, 도림백화점 라디오부는 계획적인 프로 없이 주로 라디오방송의 중계만을 하고 있었다. 반면, 양주문화사는 807PP 120W가량의 앰프 1대로써 아침 5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를 쉬지 않고 다음과 같은 편성에 의거하여 방송하고 있다고 한다.

〈양주문화사의 방송프로그램〉

05:00	방송개시
05:00~14:00	KBS중계
14:00~15:30	하오(下午)음악
15:30~16:00	희망음악교습(敎習)시간
16:00~18:15	KBS중계
18:15~18:25	연속낭독
18:25~21:30	KBS중계

13) 당시 정민(1961)은 의정부 지역이 경기도에서 유선라디오 방송국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주요한 이유로 미군부대의 입지와 양호한 전기사정을 들고 있다. 그는 “그다지 넓지 않고 또 미군(美軍)부대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비교적 유복한 편인 이곳에는 두 군데의 유선방송업체가 있다. 전기사정도 비교적 괜찮은 이곳에도 청취자가 2,000여 명이 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가 불과 3만여 밖에 안 되는데 2,000여라면 거의 전부를 흡수하고 있”(69쪽)다고 서술하고 있다.

21:30~22:00 YWCA음악실
 22:00~23:20 KBS중계
 23:20 방송종료

비교적 활발하게 유선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양주문화사의 사례는 당시 1960년대 초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편성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전체 방송시간 18시간 20분 중에서 약 2시간 30여 분은 자체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었고, 10분 정도의 교양방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관리법’ 제정 이후엔 유선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 또한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했다. 유선방송수신사업의 범위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 8. 24 법률 제692호) 제5조에 의하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할 수 있는 방송의 범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2).

1. 국영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2. 각령(閣令)으로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의 방송, 단 광고방송은 하지 못한다.
3. ① 기타 각령(閣令)으로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체방송
 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原) 방송내용을 변조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시행령」(1961.9.22 각령 제143호)의 제9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체방송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국영방송의 총 중계시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리(福利)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계몽적인 내용의 교양방송만 자체방송으로 제작편성할 수 있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중계방송

14) 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사항의 방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재건국민운동기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의 방송에 한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송은 주민의 복리(福利)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계몽적인 내용의 교양방송에 한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시행령> 제 9조 2항, 즉 유선방송사업체에 의한 자체방송은 1963년 9월 17일에 閣令 제1559호로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그 편성비율과 편성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송은 주민의 계도(啓導)를 목적으로 하는 교양방송에 한하되, 당해 유선방송수신사업자가 행하는 국영방송의 총 중계시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가 중계하는 국영방송국의 방송중지시간이나 음악 또는 오락방송의 시간 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2, 350~352쪽).

의 범위제한은 청취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유선방송업자의 재정적 기반을 침식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유협은 제한규정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방송의 지역적 범위가 좁은 유선라디오 방송이 청취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전파방송의 프로그램을 방송시간의 90%이상을 중계하여야 하고 또 중계방송의 대상 또한 국영방송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방송편성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요컨대 유선방송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청취자들이 원하는 바를 참작하여 이에 적합한 자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 제한규정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 (중략)… 나는 유선방송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여론이라든가 그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방송이란 무엇보다도 우선 청취를 해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취자의 의사에 반해 그들에게 싫증나는 방송만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공염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법이 규정한 자체방송 가능시간 만이라도 청취자들이 원하는 왜색이나 양색이 없는 깨끗한 민속적인 음반재생이나 민영방송의 오락극 재생 등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사상태에 있는 유선방송 자체도 살릴 수 있으며 또 유선방송에 부과된 크나큰 사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황보영, 1965, 9쪽)

이처럼 전유협은 편성의 자율권을 청원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유선방송사업의 질서확립의 차원에서 자체방송의 적정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각 사업자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정부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자체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는 점, 그리고 자체방송 정화를 위한 협회 내부의 방송자료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⁵⁾ 이에 따라,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실물도 전해지지 않았지만, 자체방송의 경우엔 그때그때의 특별한 긴급연락과 전유협에서 발행하는 방송자료지인 <메아리의 샘>에서 선택하여 방송하였다.¹⁶⁾

15) 특히 자체방송을 위한 방송자료를 <유선방송소식>을 통해 배부하여 유선라디오 방송업자 상호간의 자율적이고 일원적인 조직화를 꾀하였다는 점은 방송의 전문직화와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또한 이는 3장에서 다룬 전유협의 무선방송국 설치 추진, 그리고 내무부 추진의 방송일원화 계획과 일정정도 관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6) “이 <메아리의 샘>은 정부의 지원으로 전유협에서 간행되는 것인데, 1971년 6월호의 목차를 보면, ▶ 스포

자체방송의 적정에 있어서는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하나의 행사를 계획, 구제안까지 수립했으나 연내에 실시치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또한 방송자료를 수시(隨時) 제공, 방송에 활용케 하려 하였으나 이것 역시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일인바, 내년부터는 주로 회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효를 거둘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방송자료의 공급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수성도 있으나만큼 각 지부가 이에 주력하는 바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모도(謀道)에서는 매주, 어김없이 방송자료를 전회원에게 배부, 방송에 널리 활용케 하고 있다. 각도(各道)에서는 공보실, 농협·수협·문화기관과 협의하여 방송자료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현행법상 유선방송은 국영방송에 한하여 중계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송을 중계하는 사업자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바 이것은 일소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스스로가 준비에 투철한 다음에 우리 권익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획실, 1965b, 9~11쪽)

현재 중계방송된 내용과 자체방송된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방송난청지구와 라디오보급이 어려운 산간벽지에서 ‘엠프방송’은 그날그날의 日氣를 예보하여 주고 농사정보나 공지사항 등을 알려주며, 국영방송을 중계해 주어 유일한 오락적 문명이기의 구실도 해내고 있다”(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8쪽)는 잡지기사의 언급, 그리고 “과거 유선방식에 의한 엠프방송은 통신수단 이외에도 자체적인 방송이거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중계이건 간에 오락과 공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존재했고 민영의 경우엔 더욱 그러했다”(농촌진흥청, *n.d.*, 16쪽)는 농촌진흥청 책자의 언급으로 보아, 중계방송된 주 내용은 오락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각 유선라디오 방송국들은 법률로 정해진 법정 편성비용의 제약 속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기업적 운영에 필수적인 많은 청취자 확보를 위해 다수의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트 방송편, ▶ 과수의 병해와 방지법, ▶ 돈사의 여름철 관리, ▶ 모유에 대한 상식, ▶ 살충제를 함부로 뿌리지 마시다, ▶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 ▶ 고운 말씨, ▶ 해충의 방제와 살충법 등으로 되어 있”(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8쪽)에서, 주로 농사에 대한 정보와 일반교양을 위한 생활정보 등이 주 내용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전유협' 창립의 의미와 초기 유선방송사업 구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법 제도의 공백 속에서 비록 영세한 수준이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되었던 1960년대 초반 유선라디오 방송사업의 상황은 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엄격한 시설기준은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의 상승과 함께 가입자 확보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고, 너무 낮게 책정된 법정 청취료와 저조한 청취료 징수율 등으로 인해 기업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중계방송과 자체방송에 대해서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편법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90% 이상의 국영방송의 중계와 10% 이내의 교양프로그램 편성을 규정하고 있는 '관리법' 규정은 청취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유선방송업자의 재정적 기반을 침식시킬 우려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법정 청취료 이상으로 자의적으로 청취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국영방송 이외의 다른 방송국을 중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정도로 유선방송업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매우 컸던 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유선라디오 방송에 대한 공보적 전유를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유선방송업계의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국유선방송협회이다.

1) '전유협'의 창립과 의미

관리법 제정을 통해 유선라디오 방송을 공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유선방송정책과의 관계에 있어, 유선라디오 방송업자들의 협동조합적 조직체로서 발족한 '전유협'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첫째는 전유협의 인가날짜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부처와 협상하는 대표적인 조직이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첫째로 전유협의 인가는 역사적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다. 우선 전유협의 인가날짜는 1963년 12월 16일로서, 이 날은 공교롭게도 군사정부의 마지막 날이자 '방송법'이 제정된 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으로 간주해버릴 수 없는 주요한 이유는, 1960년대의 (무선)방송체제가 확립되는 법률적 틀로서 무선 기술의 관리를 규정했던 '전파관리법'(1961년 제정)과 방송의 사회적 용도와, 편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규제를 규정했던 '방송법'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회가 아닌 비상시국 하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제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선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률이 소위 '현행법과의 관계'라는 법리적 해석에 의해 입법·제정되고(윤상길, 2011a, 188쪽) 비상시국 하의 행정부에

의해 전유협이 하나의 법인체로 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1960년대 (무선)방송체제의 성립이 군정(軍政)의 마지막 날에 완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유협'의 인가 또한 군정의 마지막 날에 완비되었던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도, 대표적인 유선방송인단체로서는 1961년 4월 10일 '전국 반공문화 앰프방송협회'가 구성된 바 있고, 또한 5·16이후 군정의 유선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철회방침이었던 시기에 대(對)정부와의 합법적 교섭단체이자 유선방송업자 간의 연락기구로서 전국앰프방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다(윤상길, 2011a, 177~178쪽). 그리고 1961년 8월 '관리법' 제정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조용천(曹應天)에게 협회 조직을 명령하자 '전국반공문화 앰프방송협회'의 회장으로 줄곧 버텼던 조현종(趙玄宗)이 조직체를 인계한 이후,¹⁷⁾ 이 단체에 몸담고 있던 박용하(朴容夏)를 한국방송문화협회 이사장으로 발령 내었던 오재경(吳在瓌) 공보부 장관은 1962년에 유선방송의 업무를 한국방송문화협회에 흡수¹⁸⁾시키기도 하였다(이석, 1965a, 15쪽).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중반 이후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관리법' 제정 이후 공보부는 유선방송업무의 주관단체 선정에 고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963년 12월 16일까지 독립적인 유선방송협회를 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결국 "해방직전 단파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고 그간 지방 각 방송국장을 역임한 유선방송의 실력자였던 풍부한 방송관록의 민완 이태구(李太九) 씨²⁰⁾가 조대진(趙大鎭), 임석운(林石昫), 진태원(秦養源), 정기영(鄭棋永), 박재규(朴在奎) 등을 규합함으로써, 사단법인 전국유선방송협회가 공보부로부터 창립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이석, 1965a, 15쪽). 이때 공보부에 창립허가를 받게 된 경위를 알려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17) 그 후 "반년 남짓해서 공보부와 견해차로 이것마저 쓰러졌다. 그래서 강대직(姜大直, 후일 전유협 이사와 서울특별시 지부장을 역임) 씨는 서울지부 소속이라 하고 중앙기구에 참여해 보려 했으나 국민운동본부의 신망을 받지 못하여 그나마도 탈락되었다"(이석, 1965a, 15쪽).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관리법' 제정 이후 공보부가 유선방송 관련 업무를 국민재건운동본부에 맡기려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 1962년 7월과 8월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농어촌 라디오 및 앰프 보내기 운동은 사실상 '한국방송문화협회'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윤상길, 2011, 191쪽)

19) 이석(1965a, 15쪽)에 의하면, 유선방송업무의 주관단체가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있었을 당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공보부 장관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던 인사진용(人事陣容)"이었다.

20)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L씨는 1964년 11월 11일자 <방송> (14호)에 실린 "거북이 지원부대를 돌아보다"의 기사와 방송인 이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태구인 것으로 보인다. "거북이 지원부대를 돌아보다"에서는 "이 협회 창립에 참가했던 방송인으로는 이태구 이사(理事)가 있고"라는 언급이 있고, 제주방송총국의 홈페이지 (<http://jeju.kbskorea.net>)에는 해방직후인 1947년 10월 30일에 "이태구 목포방송국 방송과장 일행이 제주에 내려와 현안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언급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공보부가 유선방송업무의 주관단체 선정에 고심했다는 점, 그리고 “협회 조직은 민정(民政) 이양(移讓) 직전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태구 씨가… 각각 분투하게 하”(이석, 1965b, 15쪽)였다는 언급으로 미루어볼 때, ‘민정 이양’(1963년 12월 18일) 바로 전날에 이뤄졌던 ‘전유협’의 창립인가는 독자적인 협회를 조직하고자 했던 유선방송업계 인사의 정세판단과, 민정 이양 이후 군정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에 대한 직접적 통제 및 개입의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환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공보부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창립 이듬해인 1964년 7월 협회의 회지〈유선방송 소식〉이 창간되었을 당시 게재되었던 협회 임직원 박성휘(朴聖暉)와 강대직(姜大直)의 글은 전유협의 자기역할 인식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 있어 (보수, 확장을 할 만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는 상황에 있어) 전국 유선방송업자들은 협동체적 조직으로 본회(本會)를 창설하였으나, 자체재정이 전무하여 중앙기구마저 마비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이상 유선방송을 유지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중략)… 그리고 일본 음파와 복괴의 전파로 장애를 받는 남해안 일대와 방송국의 원격(遠隔)한 무전지대(無電地帶)에는 외음(外音)의 장애를 삭제할 만한 8石이상의 값비싼 고성능의 트랜지스터의 보급이 불가능할 바에야 차라리 몇 십 갑절 유리한 “앰프”시설의 철저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 국가목적을 안선(安宣)하게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오니 이상의 諸사정을 심고하시와 입법 행정 양부(兩府)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시옵기를 오등(吾等)은 전국 유선방송업자를 대표하여 삼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박성휘, 1964, 29쪽)

동 법인체의 효과적 활용을 기하는 것은 당면한 중농정책완수와 농어촌근대화의 획기적인 성과이며 역사적 과업완수에 지대한 공헌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강대직, 1964, 13쪽)

우선 박성휘의 글에서는 전유협이 2장에서 언급하였던 바의 유선라디오 방송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자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협동체적 조직으로서 창설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당시 극동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던 전파전(電波戰)의 상황 속에서 유선라디오 방송의 철저한 육성만이 방첩이라고 하는 국가목적 달성을 수 있는 첩경임을 전국유선방송업자를 대표하여 건의함을 밝혔다. 더 나아가, 강대직의 글은 당면한 농어촌 근대화 정책과 그 과업완수를 위해선 전유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러한 협회 임직원의 글은 당시 전유협이 스스로를 대내 혹은 대외적으로 대정부 협상을 위한 대표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유협의 창립인가 과정과 전유협의 자기 역할 인식을 종합해 볼 때, 전유협의 창립은 “방송을 구성하는 단위들이 단일하며 강압적이고 비경쟁적이며 위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에 따라 조직되며 그 구성단위들이 국가에 의해 인가되고 통제됨으로써 자율성이 매우 제한된 방송체제”(조항제, 1998, 294쪽)로 정의될 수 있는 ‘국가-방송 코포라티즘’이 유선라디오 방송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전유협의 활동영역은 대체로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전유협이 대(對)정부 협상권을 가지고 주무 행정부서(공보부, 체신부, 내무부 등)와 직접 교섭하고, 자율적인 협동체로서 각 지역 지부를 통해 소속 유선방송국의 방송서비스 내용과 질을 통제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유선방송국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작과 편성의 자율권을 통해 지역의 필요에 봉사하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되게 되었다.

2) ‘전유협’의 초기 사업구상과 관영앰프 합리화 추진

“운영권력이 하부에 있는 상향식조직으로 구성된”(박용빈, 1964, 31쪽) 유선방송업자의 대표체로서 전유협은 설립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對)정부 협상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아래로부터는 유선라디오 방송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수렴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익단체’임을 끊임없이 강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역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나라 유선방송업을 완전한 공익사업체로서 체계화하고 본연의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적으로는 본연의 명분을 다할 수 있는 건실한 정비와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外로는 확고한 운영관리의 조직적 체계를 확립하여 공동목적을 위해 전진하는 데서 많이 가능할 것이다. (도지부(道支部)를 돌아보고: 전북도지부편(全北道支部編),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26쪽)

오늘날 우리 유선방송업은 자발적인 개인의 투자로 발전되어 왔으므로 개인의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유선방송의 효율적인 방송의 일원화를 위하여 유선방송업자는 각자의 권익을 떠나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 유선방송협회는 공익단체로서 상향식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권력은 하부에 있고 …(하략)… (박용빈, 1964, 31쪽)

현행법에서도 **유선방송의 공익성을 인식하는 司稅당국의 호의**에 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완전면세대상이 되도록 공보부에서 법적 연구 중에 있다. (유방(有方)논단: 백마디 건의 보다 한가지 의무이행(義務履行),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4쪽)

앞의 두 인용문들에서 보는 바처럼, 전유협은 비록 유선방송업이 자발적인 개인의 투자로 발전되어 왔지만 정부를 상대로 정상적인 육성을 도모하기에 앞서 공익사업체로서의 소임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또 마지막 인용문에서 보는 바처럼, 공익단체로서의 자기규정이 실제로 정부당국에게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유협은 대정부 협상주체의 내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2장에서 살펴본 바) 당시 많은 기술적·재정적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각 지역 유선방송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아갔다. 이에 따라 창립 이듬해인 1964년 제기되었던 요구사항들은 대체로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에 주로 초점 맞춰져 있었다. 즉,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소형 전주(電柱)의 가설과 미흡 기재(機材)의 보충, 기타 앰프에 필요한 기구기재의 제작 사업에 대한 보조 용자 알선(斡旋) 등 동 협회를 통한 제반 편의의 공여에 정부는 의욕적이고도 계획적인 예산 조치 등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강대직, 1964, 13쪽)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협회 초기의 의제들이 주로 시설 및 재정 지원에 집중되었는 데에 반해, 비록 유선방송업계 일각의 목소리에 불과해 바로 폐기되었지만²¹⁾ 유선방송업계의 적극적인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유선라디오 방송을 일원화하기 위한 무선방송국 추진이었다. 이는 당시 민간상업라디오 방송국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이 3,500여 방송사가 다원적인 자체방송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일지(日誌)나 월지(月誌)로서 관리하는 정도의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의 미온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제만 으로서는 멸공통일의 사상전(思想戰)의 면으로 보아 무책임한 자체방송이 지방농어촌민

21) 무선방송국 추진은 비록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달성하고자 했던 일원화의 시도는 결국 1965년부터 내무부의 주도로 추진된 시군(市郡)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으로 실현되었다.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생각할 때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일원화는 시급히 성취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전체국민의 8할이나 되는 농어민의 문명의 이기로서 또는 정부공보의 전초적인 마스크으로써 고식적인 현황을 탈피하고 유선방송의 특이성과 독자성을 살려 유기적인 방송체계를 갖추어 농어민의 생활감정에 알맞은 생활지도와 정서를 정화시키는 방송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3,500여 업소와 직결하는 협회직영의 중앙방송국(무선)설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박용빈, 1964, 31쪽).

(협회 운영의 지부진함 때문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965년 초 협회 본부의 진용을 완전히 개편, 쇄신하여 새 기구로 발족”(기획실, 1965b, 9쪽)한 전유협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의제를 만들어나갔는데, 이 의제는 특히 1965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전국유선방송사업자 대회 때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사업자 대회 때 주로 건의되었던 사항은 2장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민영방송 중계와 광고방송의 허용’을 골자로 한 편성자유권 관련 사항과 청취료 인상, 그 밖에 보조금 및 면세,²²⁾ 배선용 전선인 W190선의 배부, 방송요원의 훈련 등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되고 추진된 것이 바로 ‘관영 앰프의 합리화’였고(유방논단: 백마디 건의보다 한 가지 의무이행,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4쪽), ‘방송요원의 훈련’이라는 의제가 포함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유선방송사업의 기업적 성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자 방송내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방송요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63년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 진계림(1963, 40쪽)은 “유선방송업자는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담당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족한 시설이나마 성의를 다하여 양질의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며, 타방(他方)에 의존할 생각보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력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앰프는 고사하고 스피커도 성능이 저하되어 소음 때문에 듣기가 불결하며 자체방송 내용이 치열(稚劣)하여 청취의욕을 감소케 하”는 문제에 대해 유선방송업자의 교육문제로서 접근해 생각해 보아야 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협회 차원에서 건의사항으로 제기되고, 공보부에까지 공식적인 의견이 개진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

22) 당시 유선방송업자들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최저 2천원에서 최고 5천원까지가 1분기 소득세로 징수되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가뜩이나 수지가 많지 않아 고심하는 업자들은 또 다른 시달림을 받게 되었고 유선방송업의 운영난을 더해 주는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안미암, 1963, 49쪽).

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65년 8월에 개최된 전국유선방송 각 도 지부장회의에서 전유협은 공보부 장관에게 “국가의 정확한 홍보와 건전한 국민여론의 조성을 위한 요원의 질적 향상은 방송기술면으로 보아 시급하고 또 절대 중요하므로 이의 조속한 실천이 있으시길 바란다”(유선방송사업자 허가증갱신, <유선방송소식> 1965년 8월호, 9쪽)고 건의하였고, 방송요원 교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보부의 알선으로 처음으로 아세아재단에 후원을 교섭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주한미국공보원(USIS) 원장과의 다각적 협의를 통해 협조 약속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유협은 만일 타기관에 후원에 의해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협회 자체경비를 마련해서 1966년도에 기필코 이를 실시함과 아울러 교육이 끝난 뒤에는 방송요원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기획부, 1965b, 10~11쪽). 이후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1970년대 초 전유협이 “군(郡)방송센터의 방송요원의 기술 강습 등을 주 사업으로 한다”(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방송> 1971년 9월호, 29쪽)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방송요원 교육은 이후 꾸준히 실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유협이 의도했던 ‘관영앰프의 합리화’ 방안은 전체 유선방송업계의 합리화와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치해놓은 앰프, 즉 관(官)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유선방송사업체인) 관영앰프 유선라디오 방송국을 민간업자가 위탁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관영앰프의 운영체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공보부에서도 1965년 5월 중에 총 네 가지 방안, 즉 운영이 부진한 업체에 국한한 불하와 민간업자 위탁운영, 중점 지원, 그리고 운영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관영앰프의 불하 또는 위탁운영의 방안에 대해 각 도(道)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그러나 모든 관영앰프의 위탁운영을 바랬던 전유협의 기대와 달리, 각 도의 의견은 운영 부진한 것에 한하여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대세였다(기획실, 1965b, 10쪽). 이에 따라, 전유협은 건의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운영이 부진한 업체에 국한된 방안이 가진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는데, 첫 번째 대다수 관영앰프의 운영관리가 운영기술이 없는 사람, 즉 보통 이장이나 동장, 혹은 이들이 임의대로 맡겨놓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이 부진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점, 두 번째 (불하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설지가 의문이라는 점, 세 번째 (지원육성의 경우) 운영을 잘못된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 반해 잘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시킨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기획실, 1965a, 22~24쪽).

그러나 모든 관영앰프의 위탁운영을 추진하였던 전유협의 시도는 사실상 좌절되었던

표 1. '관영앰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유협외의 반론논거

구분	불하 방안	위탁운영 방안	지원육성 방안
반론내용	1. 어느 관영앰프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부진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며, 만일 현재는 부진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내에는 부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분히 지지고 있음. 2. '불하(拂下)'라고 하는 문제가 우선 절차상으로 보아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물론, 이미 노후화 내지는 폐물화된 것을 누가 선뜻 매수(買受)하겠다고 나서겠느냐 의문임. 3. 관영앰프에 대한 처리의 방법이 마땅히 통일된 방법이라야 지 성격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전혀 이질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음.	1.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운영부진한 것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그 주된 이유는 불하 방안 반론 근거 1과 같음.	각안(各案) 중에서도 이 방안이 가장 不適하고 가장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볼. 차라리 '운영양호한 것에 한하여 중점지원하고 나머지는 적의조치(適宜措置)한다'는 방법만 못함. 1. 운영부진한 것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극히 편협된 생각임. 즉, 운영을 잘못된 사람은 특혜를 받고 어떻게든지 잘해보겠다고 출혈한 사람은 소외된다면 이는 모순임. 2. '운영부진'을 '운영양호'로 일대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한정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출처: 기획부, 1965a, 23~24쪽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66년 1월 27일 개최된 각도 지부장 회의의 회의록에 실린 공보부측 답변에 의하면, 관영앰프를 도(道)에 이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 및 방법을 논의 중에 있으며 민간 불하 및 위탁관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에게 일임하여 그 지방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게 하도록 처리되었기 때문이다(이시복, 1966, 23쪽). 어찌 보면 이러한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관영앰프의 위탁운영 사업은 이미 1965년 초부터 내무부의 주도로 준비·추진 중이었던 시군 단위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혹은 시군 방송센터 건립사업, 혹은 앰프일원화 5개년 계획)과 상당부분 그 사업내용이 겹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유선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재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그리고 국가와 관계 속에서 시장 내 행위자로서 유선방송사업

자가 가진 자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1960년대 전반기 유선라디오 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 그리고 유선방송업자들의 협동체적 조직으로 출범했던 전유협(전유협)의 초기 사업구상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이를 통해 본고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64년대 초중반기 유선라디오 방송의 기술적 운영은 방송선의 노후화, 보안기 미부착으로 인한 잦은 누전낙뢰사고, 시설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시설기준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선라디오 방송업자는 정부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했다. 그리고 재정적 운영에 있어서도, 당시 대다수 관영앰프(관영 유선라디오)뿐만 아니라 상당수 민영유선라디오 방송국의 재정적 기반 자체는 너무 낮게 책정된 법정 청취료와 저조한 청취료 징수율 등으로 인해 매우 취약했다. 한편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는 각 유선라디오 방송국들이 법률로 정해진 법정 편성비율의 제약 속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많은 청취자 확보를 위해 다수의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60년대 전반기 유선라디오 방송의 기술적·재정적 운영 및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당시 대다수 유선라디오 방송국이 기업적으로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는 제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유선라디오 방송이 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취약했던 당시의 상황적 조건 속에서, 독자적인 협회를 조직하고자 했던 유선방송업계 인사의 정세판단과 민정 이양 이후 군정 기간 동안의 유선방송에 대한 직접적 통제 및 개입의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환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공보부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서 출범한 전유협은 유선방송업자 간의 협동체적 조직이자 대내 혹은 대외적으로 대(對)정부 협상을 위한 대표체로서 유선방송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였다. 즉, 기업적 성장기반의 미약함 속에서 정부와 유선방송업계 간의 정략적 제휴관계로서 출범한 전유협은 일정 부분 ‘국가-방송 코포라티즘’이 유선라디오 방송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전유협은 유선방송업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부처를 상대로 업계 공통의 이익을 얻어내는 활동으로서, 민영업자에 의한 관영앰프의 불하를 골자로 한 ‘관영앰프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한편, 공익사업체로서의 자기인식을 근거하여 (방송요원 훈련과 같이) 제한적이거나 유선라디오 방송을 전문직주의로의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유협의 노력은 196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행정부 주도의 유선방송 일원화 사업에 묻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 정부에 의한 유선라디오 방송의 공보매체화 과정을 통해 국가-전유협의 관계는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상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유선라디오 방송사업자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전유험의 초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가가 유선라디오방송을 공보적으로 영토화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자료의 부족으로 1960년대 후반기를 충실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과 보완을 위한 사료개발(〈유선방송소식〉, 그리고 유선방송국의 자체방송내용을 담고 있는 〈메아리의 샘〉 등)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대직 (1964). 유선방송과 농어촌의 근대화.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 거북이 지원부대를 돌아보다 (1964, 11, 11). <방송>, 14호.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편) (1982). <한국언론법령전집, 1945-1981>. 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 기획실 (1965a). 관영애프 운영형태의 쇄신을 촉구한다. <유선방송소식>, 송년호.
- 기획실 (1965b). 65년을 되돌아 본다: 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선방송소식>, 송년호.
- 김재문 (1982, 8월). 사설 '유선음악방송' 그 내막. 월간 <방송>, 창간호.
- 농촌진흥청 (n.d.). <새마을 애프용 영농방송기법>. 농촌진흥청.
- 도지부 (道支部)를 돌아보고: 전북도지부 편.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 박기성 (1991). 한국방송사. 방송문화진흥회 편 (1991). <한국방송총람>. 서울: 나남.
- 박성휘 (1964). 유선방송의 공개건의서.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 박용빈 (1964). 재건사업과 협동정신.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 방송좌담회: 무허가유선방송업자 일제단속을 주제로 (1965). <유선방송소식>, 8월호.
- 백봉하 (1964). (기술지도단)유선방송시설은 우선 이렇게.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 안미암 (1963, 12월). 애프촌을 진단한다. <방송문화>, 19호.
- 유방(有方)논단: 백 마디 건의보다 한 가지 의무이행(義務履行) (1965). <유선방송소식>, 9월호.
- 유선방송사업자 허가증갱신 (1965). <유선방송소식>, 8월호.
- 유선방송의 활로는 CATV인가 (1971). <방송>, 9월호.
- 유선방송 청구료 인상 건의 공개 (1965). <유선방송소식>, 9월호.
- 윤상길 (2011a). 1960년대초 한국 유선라디오 방송제도의 성립과 발전: 공보부와 체신부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1호.
- 윤상길 (2011b). 1960년대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부락화'. 한국방송학회 (편). <한국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서울: 한올아카데미.
- 이석 (1965a). 유선방송협회의 발자취 (上). <유선방송소식>, 8월호.
- 이석 (1965b). 유선방송협회의 발자취 (中). <유선방송소식>, 9월호.
- 이시복 (1966). 보고 각도지부장 회의: "유선방송 확장의 해" 결의를 굳혀. <유선방송소식>, 1·2월 합병호.
- 임석운 (1964). 협회운영은 우리손으로. <유선방송소식>, 창간호.
- 정대철 (1992). 유선방송사. <방송문화연구>, 4집. 서울: 한국방송공사 (KBS).
- 정민 (1961). 유선방송의 개관. <전파과학>, 21호.
- 조항제 (2009). <한국방송의 이론과 역사>. 서울: 논형.
- 조항제 (1998). 1960년대 한국 방송의 자율성의 성격: 코포라티즘과 복합대기업화. <한국방송학보>, 10권 1호, 289-322.
- 진계림 (1963, 8월). 국내유선방송고찰. <방송문화>, 15호.

최준 (1965). <방송론>. 서울: 일조각.

최창섭 (1985). <방송원론>. 서울: 나남.

편집부 (1961, 3월). 농촌의 귀염둥이, 유선방송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전파과학>, 21호(3월호).

한국방송사업협회 (1965). <65방송연감>. 서울: 한국방송사업협회.

허준 (1965). 유선방송은 국내최고의 보도기관: 미약한 육성책은 정부의 미쓰. <유선방송소식>, 1965년 8월호.

황보영 (1965). 자체방송(自體放送) 제한규정의 완화를 바람. <유선방송소식>, 1965년 9월호.

투고일자: 2016. 9. 30. 게재확정일자: 2016. 11. 23. 최종수정일자: 2016. 11. 28.

A Study on Management of Cable Broadcasting Business and Activities of the National Cable Broadcasting Association in 1960s

Sangkil Y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Shinhan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transfiguration process of cable broadcasting business in the early 1960s of Korea. Especially, on the basis of a critical mind of examining autonomy of cable broadcasting operator as agent, this paper examined not only the technical and financial business management, and the drawing up of a program, but also business plans of the National Cable Broadcasting Association in initial establishment time of 1960s.

KEYWORDS Cable Broadcasting, Amplifier, Speaker, The National Cable Broadcasting Association